학생 행동강령 (Student Code of Conduct)

다음 규칙은 브룩클린고등학교(Brookline High School: BHS)의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 규칙은 학습,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개인 재산과 학교 재산에 대한 배려가 보호 받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 규칙을 위반한 결과는 각 규칙에 대한 설명에 포함한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s: IEP)의 적용대상인 학생의 정학과 제적, 수색 및 체포 그리고 훈육**을 위한 다음의 절차 및 방침은 학교위원회의 훈육규정 (JG-R2)을 따르며, 그 규정은 교장실에 비치한다.

징계조치는, 학생이 학교 밖에서 한 행동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학생 행동강령에 위배되고 그러한 행동이 학교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브룩클린고등학교 임원진이 취할 수 있다. 처벌은 행동강령에 기술된 처벌과 일치한다.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교내 또는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학생의 특정 행동은 본 편람에 나와 있는 행동규칙,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 방침, 그리고 특정 매사추세츠주 일반법에 의해 금지된다.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의 방침 편람은 교장실 및 www.brookline.k12.ma.us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훌륭한 시민정신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다. 학생은 타인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학생은 권한을 존중하고 교칙을 따라야 한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222장 (학생의 교육 서비스 이용 및 학교에서의 제적에 관한 법률(An Act Relative to Students' Access to Educational Services and Exclusion from School))은 매사추세츠주에서 법제화되었다. 이 법에는 학교에서 퇴출되는 학생이 퇴출기간 동안 계속 학업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이 요약되어 있다.

연속 10일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퇴출된 학생은 그 기간 동안 학업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교장이 작성한 전교적 교육 서비스 계획 내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속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정학 당한 학생도 정학기간 동안 학업 진도를 나갈 기회를 갖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에는 어느 학생도 90일의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퇴출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위반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와 이의제기에는 학생과 그 학부모 및/또는 보호자가 포함된다. 학교장은 학생의 비행에 대해 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매사추세츠주의 학생 징계 법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구하려면, 매사추세츠주 초중등 교육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DESE) 학생징계규정(603 CMR 53)과 http://www.doe.mass.edu/ssce/discipline/에서 제222장의 규정을 참고바람.

II. A. 정학과 제적

1. 정학의 목적은 위반행위(1 회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모든 관련자들 (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그 아동 및 그 문제에 집중시키는 데에 있다. 그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학교생활에의 장기 참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학의 목적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자들은 학생이 정학기간 동안 출석하지 못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은 이수한 학업에 대하여 학점을 받는다.

2.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학교 부서의 모든 직원들은 학생에게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한다. 실제로, 긴급사태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학생이 십(10) 일이하의 정학 또는 다른 중대한 징계조치를 받기 **전에** 학생처장, 프로그램 조정관(Program Coordinator)또는 교장의 입회하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심리에서, 당해 학생은 다음을 받아야 한다:
   a. 혐의내용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 (훈육보고서가 서면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b. 그 학생에게 불리한 증거의 설명,
   c. 사건 전말을 학생 입장에서 설명할 기회.

3.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거나 정학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경우, 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세울 권리와 옹호인이 변호할 권리를 포함하는 다른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4. 정학은 교장, 교육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위원회에 그 순서대로 항소할 수 있으며, 당해 항소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학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당해 항소는 10 수업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5. 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1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하거나 학교에서 제적(영구 퇴출)할 수 있다. 교장은 학생이 혐의를 받는 비행으로 인해 퇴출되기 **전에**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공정한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일반법 제76장 제17조).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심리를 통지할 때,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훈육규정(Discipline Code) 중 제적 조항의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당해 심리에서, 당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권리가 있다:
   a. 혐의사실의 서면통지;
   b. (학생의 비용으로) 변호인 또는 옹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
   c. 심리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
   d. 심리 전에 문서화된 증거 열람;
   e. 증인을 심문할 권리;
   f. 합리적으로 신속한 서면 결정 (당해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포함);
   g. 필요한 경우,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회의록을 요구할 권리;
   h. 다른 경우라면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39장 제23B조 (2)항에 의한 통상적 절차인 비밀(비공개) 회의가 아닌 공개 회의에서 심리가 개최되도록 요구할 권리.

6. 다음 방침은 1993년 매사추세츠 주 교육개혁법(1993 Massachusetts Educational Reform Law) 및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의 일부이다:

   a.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가 주관하거나 학교와 관련 있는, 운동경기를 포함한 행사에서 권총 또는 칼 등을 포함한 위험한 무기; 제94C장에 규정된, 마리화나, 코카인 및 헤로인 등을 포함한, 규제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학생은 교장이 학교 또는 학구에서 제적할 수 있다.

   b.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와 관련 있는, 운동경기를 포함한 행사에서 교장, 교감, 교사, 교사 보조원 또는 다른 교직원을 폭행하는 학생은 교장이 학교 또는 학구에서 제적할 수 있다.

   c. (가)호 또는 (나)호의 위반혐의로 고소된 어느 학생이든 그 학생에게 심리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그 학생은 교장이 입회하는 상기 심리에서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기회와 함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d. 상기 심리 후에, 교장은 (가)호 또는 (나)호를 위반한 것으로 교장이 판단한 학생을 자신의 재량으로 제적시키지 않고 정학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생의 정학을 결정하는 교장은 가장 적절한 구제방법으로서 제적 대신 정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e. 이 진술서에서, 교장은 자신의 의견으로는 이 학생이 학교에 계속 출석하더라도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직원의 안전, 보안 및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술해야 한다.

   f. 이 규정에 따라 학구에서 제적된 학생은 교육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제적된 학생은 교육감이 입회하는 심리에서 변호인과 협의할 권리가 있다. 항소의 주제는 당해 학생이 이 조항의 특정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g. 어느 학생이 이 조항의 규정에 의거 제적되어 다른 학교에 입학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내는 학교의 교육감은 받는 학교의 교육감에게 그 학생의 제적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h. 제71장: 제37H½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어느 학생을 중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이 발행되는 즉시 또는 그 학생에 대한 중대한 비행 고소장이 발행되는 즉시, 그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은 그 학생이 계속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학교의 일반적 안녕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교장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학생을 정학조치 할 수 있다. 그 학생은 당해 정학이 발효되기 전에 당해 혐의와 당해 정학 사유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 학생은 또한 정학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와 항소 절차에 대하여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정학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항소 심리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 학생은 교육감에게 당해 정학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 학생은 정학의 발효일로부터 5역일 내에 교육감에게 항소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그 학생의 항소 신청일로부터 3역일 내에 그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그 심리에서, 그 학생은 자신을 위하여 구두 및

서면 증언을 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그 학생을 위하여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등, 교장의 결정을 뒤집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교육감은 심리 후 5역일 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정은 당해 정학에 관하여 당해 시, 읍 또는 지역 학구의 최종 결정으로 한다.

(2) 학생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와 같은 중범죄 또는 중대한 비행에 관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시인한 경우, 그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은 그 학생이 계속 등교하는 것이 학교의 일반적 안녕에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그 학생은 당해 제적이 발효되기 전에 당해 혐의와 당해 정학 사유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 학생은 또한 당해 제적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와 항소 절차에 대하여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제적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항소 심리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 학생은 교육감에게 당해 제적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그 학생은 제적의 발효일로부터 5역일 내에 교육감에게 항소 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적 후 3역일 내에 그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그 심리에서, 그 학생은 자신을 위하여 구두 및 서면 증언을 할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그 학생을 위하여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등, 교장의 결정을 뒤집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교육감은 심리 후 5역일 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해 결정은 당해 제적에 관하여 당해 시, 읍 또는 지역 학구의 최종 결정으로 한다.

당해 학생을 제적시키는 즉시, 어느 학교나 학구도 당해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i. 제71장: 제37H½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가 주관하거나 학교와 관련 있는, 운동경기를 포함한 행사에서 권총 또는 칼 등을 포함한 위험한 무기; 제94C장에 규정된, 마리화나, 코카인 및 헤로인 등을 포함한, 규제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학생은 교장이 학교 또는 학구에서 제적할 수 있다. (b) 학교 구내에서 또는 학교가 주관하거나 학교와 관련 있는, 운동경기를 포함한 행사에서 교장, 교감, 교사, 교사 보조원 또는 다른 교직원을 폭행하는 학생은 교장이 정학 또는 학교 또는 학구로부터 제적할 수 있다. (c) (가)호 또는 (나)호의 위반혐의로 고소된 어느 학생이든 그 학생에게 심리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그 학생은 교장이 주관하는 상기 심리에서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기회와 함께 진술을 할 수 있다. 상기 심리 후에, 교장은 (가)호 또는 (나)호를 위반한 것으로 교장이 판단한 학생을 자신의 재량으로 제적시키지 않고 정학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II. B. 수색 및 체포

모든 수색 및 체포는 오로지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내 학생 및 성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만 실시한다.

1. 미국 대법원의 모든 수색에 대한 기준:
   교장, 부하교장, 학생처장, 교감 또는 부교감이 학생의 신체, 사물함 또는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려면:

(a) 학생이 금지품 또는 도난당한 재산에 관한 학교의 법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b) 그 수색은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고 또한 그 학생의 연령, 성별, 위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거슬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항상 다른 학교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한다.

2. 사물함 수색:

(a) 사물함은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들의 재산이며 언제라도 학교 직원들이 검사할 수 있다.

(b) 사물함의 대규모 수색은 금지한다. 다만, 교장 또는 그 피지명인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합법적인 수색영장을 소지한 경우, 경찰은 어떠한 사물함도 언제든지 수색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는 학교 직원이나 경찰이 그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어떠한 물건도 학교로 가지고 오지 말고 당신의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II. C.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적용대상 학생의 훈육에 관한 학교 위원회 규정

다음은 학교 위원회의 훈육 규정(School Committee's Discipline Code Regul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전문은 교장실에서 입수할 수 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훈육에 대한 교육 위원회(Board of Education) 방침은 브룩클린 공립학교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훈육에 관한 모든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 방침은 각 초등학교 교장실 및 브룩클린고등학교 교장실에 비치되어 있다. 이 방침의 원칙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1. 제71B장과 IDEA의 기본 원칙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규 교육을 받는 그들의 또래 친구들과 가장 유사하고 동시에 그들 특유의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훈육에 관해서는:

   a. 특수 교육이 필요한 모든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그 학생이 그 학교의 훈육 규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b. 수정된 훈육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c. 그러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제정한 훈육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학교의 훈육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관리자와 상담하여야 하며 다음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까지 훈육 보고서를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서류철에 철해야 한다.

3.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정학은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규정된 프로그램에서 그 학생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 조치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재학 중 정학은 물론 그 학생의 규정된 프로그램에 그 학생이 참여하지 못하게 교통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a. 학교 위원회 훈육 규정 제A조 3항에 명시된 학생 정학 절차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b. 또한, 아래의 규정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기간이든 소정 기간의 정학 조치가 상정된 때에 적용된다.

   1.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Assistant Superintendent for Student Services) 또는 그 피지명인에게 정학조치가 상정된 이유인 비행을 통지받아야 한다.

   2. 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그 학생의 위법행위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받는다.

   3. 특수교육 담당 직원은 정학조치에 대한 심리에 참석해야 하며, 그리고

   4. 다음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까지 그 학생의 정학 횟수 및 기간을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서류철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4. 한 학년에 누적 정학일수가 총 십(10)일 이상의 결과를 낳는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의 정학에 대하여는, 아래의 방침이 적용된다:
미국 대법원은 한 학년에 누적 일수가 총 십(10)일을 초과하는 정학은 장애 아동 교육법(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Act)에 따라 배치 변경을 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Honig 대 Doe 108 S. Ct. 582 (1988)] 따라서, 상정된 그러한 정학 조치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a.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그 피지명인은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i.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검토**팀**)하기 위하여 당해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 **팀**(필요한 전문가를 추가함)을 소집하고,

   ii. 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회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 검토**팀**은 그 학생의 행동이 아래와 같은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 그 학생의 장애와 관계 있는지의 여부,

   ii. 부적절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의 결과인지의 여부,

   또는

   iii.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결과인지의 여부

c. 검토**팀**의 조사 결과, 그 학생의 행동이 상기 제4조 b항에 열거된 3가지 요소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그 학생은 그 학년에 누적일수 십(1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할 수 없으며,

   i.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거나, 만약 그 행동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적절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새로운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를 구하거나, 또는 규정 제71B장 제401.0조에 약술된 조치(학교 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항소국에 심리를 신청)를 따라야 한다.

iii. 당해 학생은 상기 제4조 C항 (2)호에 의거 다른 배치가 승인되거나 또는 학교 위원회가 아래 제D조 5항에 의거 그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법원 명령을 구할 때까지 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시행 중인 배치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d. 그 학생의 행동이 제4조 B항의 3가지 요소중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토팀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그 학생은 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i. 학교는 학교 위원회의 훈육 규정 제A조 3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ii. 정학 기간 동안 그 학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수정된다(“대체 계획”).

iii. 교육 위원회의 방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과(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지역 사무소로부터 그 대체 계획의 승인을 받는다.

iv. 그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학생이 소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질 것이고 대체 계획을 통하여 그 기간 동안 특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심리도 신청되지 않으며 **그리고** 교육 위원회 방침 제III.E.1.c의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v. 당해 학생은 상기 제4조 D항 (2)~(4)호에 의거 다른 배치가 승인될 때까지 또는 학교 체제가 아래 제D조 5항에 의거 그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할 때까지 그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 시행 중인 배치에 남아 있는다.

vi. 학생이 계속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학교 직원, 다른 학생 또는 그 학생 자신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때에는 즉시 정학 또는 제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정학이나 퇴학은 미국 대법원이 정한 기준[Honig 대 Doe 108 S.Ct. 592 (1988)]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a)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자학적인 행위”의 경우, 제71B장과 IDEA는 학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긴급 평가 및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b) 해당 학년에 총 정학 일수가 십(10) 일을 넘지 않을 경우,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위원회의 훈육 규정 제A4조 및 상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정학에 처할 수 있다.

c) 즉시 정학에 처함으로써 그 학년에 총 정학 누적일수가 십(10)을 넘게 될 경우, 학교 직원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구하지 않는 한, 그 학생을 정학에 **처할 수 없다**.

법에 규정된 신고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119장 제51A조)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들은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119장 제51A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에 규정된 신고기관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이 적용된다:
아래에 열거된 의무적 신고대상 사건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정된 경찰 연락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한다.

- 학교 재산에 대한 사건
- 학교 재산으로부터 반경 1,000 피트 이내에서 발생한 사건
-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
- 학교 소유 또는 학교와 계약한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

의무적 신고대상 사건의 목록

- 어느 개인이 알코올이나 흡입제 또는,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94장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의심을 받거나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 중대한 신체적 부상 또는 상당한 재산의 파괴나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 (사고제외), 또는 그와 같은 움직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269 S조 10항에 규정된 화기나 위험한 무기, 또는 기타 학교 공동체에 우려, 불안 또는 위해를 초래하거나 학교 공동체의 전반적 안녕을 어지럽힐 수 있는 물건의 소지 또는 사용 우려
- 모든 성폭력 및 강간;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와 말걸기 또는 괴롭힘; 인종, 성별, 출신국,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성가시게 굴거나 심각하게 괴롭히는 경우
- 가정폭력, (성적) 학대에 의한 폭력, 이성교제 중의 폭력, 또는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 209A조(금지명령)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
- 아동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사건
- 실제 또는 의심되는 증오범죄나 시민권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
- 방화 또는 방화용 장치나 폭발물과 관련된 사건 또는 위협

모든 직원은 그러한 사건의 신고에 대하여 제정된 건물 규약을 따른다.

II. D. 행동 강령

아래의 규칙은 공동체 기준의 모든 가능한 위반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은 아니다. 관리직 직원들은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과 지방 법령을 따라야 한다. 행동 강령은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기간 동안 교실 내외에서 적용된다.

브룩클린 고등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 편람에서 정한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된다.

행동 강령은 아래의 3가지 범주에 따라 편성된다.

1. **자신에 대한 존중**
2. **타인에 대한 존중**
3. **학교 환경에 대한 존중**

II D. 제1조. 자신에 대한 존중:

존중하는 학교 공동체는 책임감 있는 학교 시민 정신을 특징으로 한다. 아래의 규칙은 브룩클린 고등학교에 다니는 각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장려한다.

규칙 1.1: 출석 절차

우수한 학생 출석률은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습을 증진시킨다. 학생이 재학 중이면, 그 학생은 자신의 예정된 학교 수업 및 프로그램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 브룩클린고등학교의 출석 방침은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모든 교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브룩클린고등학교는 학부모/보호자들과 학생이 양호한 출석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어떠한 학교 결석이든 그 결석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또한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명확한 절차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은 결석기간 중 참석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사는 예기치 않은 (예컨대,질병으로 인한) 결석기간 동안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결석을 계획한 학생에게 미리 수업을 제공하거나 교재를 다시 가르치거나 또는 보충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총 결석 한도 (공결 및/또는 사고결)**
   브룩클린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목에 대한 학점을 얻는 데에는 등급을 매긴 성적은 물론 학습자 공동체에의 참여 및 관여가 수반된다. **학생은** 1년 과목에 대하여는 **총 21회** (수업이 열리는 140일 이상의 수업일수의 15%), 1학기 과목은 총 11회 또는 주당 2일 기준의 1학기 과목은 총 6회의 **결석으로 제한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성적증명서에는 최종 등급 “N”으로 표시된다.
   a. 모든 결석(공결 또는 사고결이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은 그 한도에 산입하되, 다만 종교상 휴일, 매사추세츠 주 학과평가시험(MCAS),

A.P.시험(대학진학시험), 특수교육 시험 및 회의, 중국 교류 프로그램, 또는 정학으로 인한 결근을 제외한다.

b. 장기간 건강상 긴급사태/입원상태에 있는 학생은 학생처장과 상의할 수 있으며 학생처장은 교장에게 그 결석을 총 결석한도에서 면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청할 수 있다.

2. 공결 처리하기

a. **학부모/보호자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정확한 생활부 기록과 료율적인 보충 조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결석 당일 오전 10시 전에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연락해야 한다**. 결석계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학생처장/프로그램 조정관 사무실에 각각 메모를 남길 수 있다. 오전 10시 후에는, 그 결석은 사고결로 기록된다.

- 결석 당일에 오전 10시의 시한을 맞추지 못한 학부모/보호자들은 3일 후까지 메모,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를 통하여 사고결의 사유를 밝힐 수 있다.
- 3 수업일 후에는, 공결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b. **자녀가 학교건물에 남아 있는 경우, 학부모들은 단일 수업에 대하여 자녀의 결석계를 제출할 수 없다.**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학교건물에 부재하는 결석(지각, 조퇴, 정오 출석)은, 그 결석을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전화로 알리거나 메모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결 처리된다. 그러한 결석에 대하여는 결석 당일의 종료 전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c. 학생이 착오로 사고결로 처리되는 경우, 그 학생은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즉시 교사에게 알려 바로 잡아야 한다.

3. **지각**

학생이 수업 시작 후 20분 이상이 지나 도착하는 경우, 그 학생은 그 수업에 지각/결석한 것으로 표시된다. 학생은 교육의 혜택을 보고 빼먹은 공부를 보충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실에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는 기록을 지각/결석에서 지각/출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당해 학생에게 보충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지각/결석은 총 결석한도에 산입한다.

4. **사고결 (무단결석: AWOL)**

브룩클린 고등학교는 학생이 모든 수업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과목에 대한 사고결에 대한 처벌이다; 1학기 과목 또는 부분 학점 과목에 대하여는 비례 횟수의 사고결이 적용된다.

a. 1차 및 그 이후의 무단결석: 교사는 사고결 당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수업 (테스트 및 간단한 시험 포함)에 대해 겨우 반 학점을 받을 학생에 대해 고심하여 처리한다.

b. 1차-5차 무단결석: 교사 및 학생처장이 적용하는 점진적 징계 (이에는 가정통신, 방과후 학교에 남게 하기, X-관 출입금지 및 교정 출입금지가 포함될 수 있음) 및 수업에서 잠재적 등급 하락.

c. 6차 무단결석: 그 과목에 대한 등급을 “N” 등급으로 한다. 상담한 교사. 출석률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학생이 출석률개선 계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자는 그 과목의 수강 종료 시에 “N”등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는 학생의 항소를 지원할 수 있다. 출석률 개선계획의 시행 중에는 어떠한 무단결석도 (착오로 받은 무단결석을 제외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다.

d. 10차 무단결석: 그 과정에 대한 최종등급을 “N”등급으로 한다. 항소 가능성 전혀 없음.

e. 학기 과목의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최종 “N”등급은 출석률 개선계획 및 항소를 조건으로, 3차 무단결석 시에 부여된다. 5차 무단결석 시, 항소 가능성은 전혀 없음 .

5. **통지**

a. 학교에서는 학생의 사고결을 그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발생일에 학부모 앞으로 자동 전화메시지를 보낸다. 이 전화통화는 의례적 통화이며, 결석 횟수를 세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b. 학부모들은 X2 학부모 포털(X2 Parent Portal)에 있는 모든 출석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c. **“Q”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출석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서, 성적표에 표시된 경고이다.

- **분기: 분기별로 수업당 총 결석횟수 6회 이상 또는 무단결석 2회**일 경우에는 성적표에 “Q/(등급)” 등급을 받게 된다.
- **학년:** 당해 학년 중 수업당 **총 결석횟수 12회 또는 무단결석 4회**일 경우에는 분기 성적표에 표시될 “Q”등급을 받게 된다.
- 어느 분기이든 그 분기에 “Q”등급을 받는 학생은 그들이 출석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 및 지원을 논의하기 위하여 담당 학생처장/프로그램 조정관과 만나 협의한다. 그 학부모들에게는 이 회의 결과를 알린다.

6. **성적 증명서**

오직 “N”만이 학생의 공식 성적 증명서에 표시된다. 분기 “Q”등급은 경고이며 성적표에 표시만 될 뿐이다.

7. **보충**

수업에서 “N”을 받는 학생은, 경우에 따라 그 학생이 그 과목에서 35회 (부분 학점 과목의 경우, 비례하여, 그 수업의 25%) 이상 결석하지 아니한 경우, 여름학교에서 수업을 보충할 수 있다. 25%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그 학생은 여름학교에서 학점을 “보충”하기 위한 과목을 수강할 자격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는 학생은 여름 학교에서 원래의 학점을 얻기 위한 수업을 받아야 하거나 다음 학년에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할 것이다. (브룩클린고등학교 여름학교에서는 “원래 학점”의 취득을 위한 영어강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8. 항소
학생이 자신의 출석률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그 학생은 학생처장이 교장에게 "N"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장이 허여하는 기타 항소는 극히 드물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여한다.

학생 결석 통지 프로그램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결석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경우, 교장은 그 학생의 결석일로부터 3일 내에 그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학생의 결석을 통지한다. 교장 또는 그 피지명자는 어느 학년에 오(5) 일 이상의 수업일(1 수업일은 당일 두(2) 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에 상당한다)을 무단 결석한 학생 및 그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와 만나 협의한다. 그 회의는 학생의 출석률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조치를 입안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절차는 교장 또는 그 피지명자, 당해 학생 및 그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공동으로 입안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다른 관련 학교 직원 및/또는 관련 공공안전,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주택, 그리고 비영리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졸업을 하지 않고 연속 10회 결석한 학생은 대체 교육, 추가의 학교 참여 접근 방법 또는 다른 취업 안내를 고려하도록 출구 면담을 가진다.

규칙1.2: 교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에서 마약 및 알코올에 대한 무관용 원칙

브룩클린 학교 부서(School Department)에서는 불법 마약의 소지 및/또는 사용, 그리고 미성년자들에 의한 알코올의 불법 소지 및/또는 사용은 잘못된 일이며 학생에게 신체적 및/또는 감성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므로, 브룩클린 고등학교는 수업일이 아닌 날에 개최되는 운동 및 사교적인 행사를 포함하여 **교내 또는 학교에서 후원하는 활동에서** 이러한 약물을 소지, 판매, 양도, 그리고/및 사용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u>법적 정의</u>

"알코올성 음료": 인간이 음료수로 소비하도록 제조된 것으로서 화씨 60도에서 부피기준으로 0.5%알코올을 함유하는 모든 액체. (일반법 제138장 1조)

"규제 약물": 일반법 제94장에 의거 규제 약물로 정의된 모든 약물이나 마약.

A. 소지: 학생이 마약이나 알코올을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 또는 학생은 이 정보를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그 학생의 관리자는 그 사안을 조사하며, 경찰을 개입시킬 수 있고, 적절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u>위법행위 #1</u>: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통지하고, 징계 심리를 실시하며, 그 학생은 **최소 5일간 정학에 처한다**. 그 학생은 의무적인 마약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 학생은 또한 학교에서 후원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고, 교정 출입금지(Closed Campus)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장이 학교에서 제적할 수 있다.
> <u>위법행위 #2</u>: 상기 #1과 동일한 모든 조치. 교장이 주관하는 징계심리를 개최해야 하고 제적 가능성을 포함한 점진적 징계조치를 취한다.

B. 사용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한 상태에서): 학생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한 상태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 또는 학생은 그 학생을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그 학생의 관리자는 그 사안을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u>위법행위 #1</u>: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통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학생을 양호실에서 집으로 데려가도록 살펴서 처리하게 한다. 그 학생은 그 학생, 관리자 및 학부모/보호자와 회의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계 심리를 실시하고 그 학생은 **최소 3일간 정학에 처한다.** 의무적인 마약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준비한다. 그 학생은 또한 학교에서 후원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고, 교정 출입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장이 학교에서 제적할 수 있다.
> <u>위법행위 #2</u>: #1의 경우와 동일한 모든 조치 및 교장 주재로 징계심리를 실시하여 제적을 포함한 점진적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C. 판매 또는 전달: 이러한 약물의 판매나 전달을 목격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 또는 학생은 이 사실을 즉시 관리자 또는 보안요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학생(들)에게는 금지품을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한다. 그 학생의 관리자는 징계심리를 개최한다. 그 학생(들)은 제 II조 B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색도 받을 수 있다.
교장 또는 지정된 관리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있다면, 훈육 보고서(Disciplinary Report)를 제출하고 경찰국 청소년 보도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장 또는 지정된 관리자는 경찰국과 협의하여 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금지품은 경찰국에 넘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이 널리 부과된다:

> **위법행위 #1**: 그 학생, 학부모 및 관리자는 교장과 만나 협의해야 하며 그 회의에서는 제적을 포함한 징계조치가 검토된다. 그 학생은 의무적인 마약 교육 및 상담을 받고 교정 출입금지 처벌을 받으며, 학교에서 후원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를 거부당할 수 있다.

D. 상급생이 상급생의 날(Senior Day), 운동경기 시상식, 졸업식 예행연습, 무도회(Prom) 및 뒤풀이 파티(After-the-Prom Party)를 포함하는 **상급생 주간 활동 중 A., B., 또는 C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출석하지도 아니한다.

E. 화학 보건 방침

브룩클린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규칙 1.2를 적용한다. 또한, **운동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아래의 화학 보건 방침은 **학교 밖에서** 브룩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코올이나 마약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다룬다**.**

방침:

그 학년 중, 8월에 시즌 전 운동 및/또는 공연예술 연습의 시작에서부터 수업 또는 토너먼트 경기의 마지막 날 중 가장 늦게 끝나는 날까지, 브룩클린 고등학생은, 그 양에 관계없이, 알코올, 마리화나, 스테로이드 또는 어떠한 규제 약물도 사용하거나 소비, 구입, 판매 또는 인도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은 이들 약물 중 어느 것이든 그것의 불법 소비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자신의 주치의가 그 학생만이 사용하는 용도로 특정적으로 처방한 합법적으로 규정된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담배 및 무연 담배의 사용도 본 방침에 따라 운동 선수들에게 금지한다.

> **위법행위 #1:** 브룩클린 고등학교 화학 보건 규칙(Chemical Health Rule)을 위반하는 학생은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Substance Abuse Prevention Program)에 위탁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다. 평가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학생처장이 주관하는 징계심리를 받게 되며, 그 학생은 학교에서 후원하는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위법행위 #2:** #1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또한, 그 학생, 코치/활동고문, 학부모, 상담교사, 예방 프로그램 상담교사 및 관리자와 협의를 준비한다.
>
> **위법행위 #3:** #1 에 따른 절차 및 교장 주관의 징계심리.

MIAA에 의해 약술된 바와 같은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추가의 화학 보건 방침에 따른 처벌:

1. 최초 위반: 운동 감독(Athletic Director)의 결정 또는 교장/그 피지명자가 주관하는 징계심리 후에, 학생이 본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학생은 그 스포츠 분야에서 모든 학교대항 경기 중 총 25%에 이르기까지 차후에 연속적으로 열리는 학교대항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한다(2005년 7월 1일자 MIAA 편람(MIAA Handbook) 참조). 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자가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학생에게 재활을 위하여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권장한다.

2. 2차 및 이후의 위반: 운동 감독의 결정 또는 교장/그 피지명자가 주관하는 징계심리 후에, 학생이 본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학생은 그 스포츠 분야에서 모든 학교대항 경기 중 총 60%에 이르기까지 차후에 연속적으로 열리는 학교대항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한다. 2차 또는 이후의 위반 후에, 그 학생이 자진하여 승인된 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자가 되는 경우, 그 학생은 최소한 행사의 40% 후에 복귀될 수 있다.

3. 처벌은 각 학년 동안 누진되며 다음 시즌 또는 다음 학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시즌이 끝난 운동선수에 대하여는, 그 처벌은 다음 운동 시즌이 시작될 때 개시한다.

공연 예술에 대한 화학 보건 방침:

공연예술부(Performing Arts Department)는 브룩클린 고등학교의 건강 가치관을 강력히 지지한다. 학생의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은 그 학생의 열정을 추구하는 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공연예술 부원은 공연 예술에 대한 화학 보건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어떠한 학생이든 그 학생에 대한 구체적 처벌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그 처벌은 학생이 공연예술부의 작품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위법행위 #1:** 브룩클린 경찰국에서 화학 보건 방침 위반이 보고된 후, 그 학생의 이름은 공연예술부장과 부원들에게 제공된다. 공연예술부장 및 공연예술부 교직원은 아래의 처벌을 시행한다: 모든 학생들은 주의 전환 프로그램에 위탁되어 공연 예술에서의 역할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학생에게 아래의 처벌이 부과된다.
> 1.) 학생이 현재 오디션 기반의, 과외 공연예술 작품에 참여 중인 경우, 그 학생은 그 작품의 다음 공연에 참가할 자격이 상실된다.
>
> **위법행위 #2:** 브룩클린 경찰국에서 화학 보건 방침 위반이 보고된 후, 그 학생의 이름은 공연예술부장과 부원들에게 제공된다. 공연예술부장 및 공연예술부 교직원은 아래의 처벌을 시행한다: 모든 학생들은 주의 전환 프로그램에 위탁되어 공연예술에서의 역할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 또한, 학생에게 아래의 처벌이 부과된다:
> 1.) 학생이 현재 오디션 기반의 과외 공연예술 작품에 참여 중인 경우, 그 학생은 그 작품의 다음 공연에 참가할 자격이 상실된다.

규칙 1.3: 학업 부정행위 금지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의 읽기, 쓰기, 시험 치르기, 프로젝트, 연구 및 숙제를 함으로써 의지력을 기른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자신의 공부를 평가하고, 반성하며, 복습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교육으로 가장 득을 본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학업의 정직에 관하여 교육하고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육 캠페인:
모든 학생들은 1학년 첫 분기에 커닝, 표절, 그리고 학업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의 방침에 관한 조언을 주는 수업 학습을 받는다. 커닝 및 표절을 정의하고 처벌을 설명하는 것 외에, 학생의 행동이 ' 학생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브룩클린 고등학교를 더 큰 공동체로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특별히 강조한다.

각 부서는 각 학년이 시작할 때 그 부서의 세부적 징계라는 맥락에서 커닝 및 표절을 고심하여 다룬다. 학교에 새로 온 학생은 관리자와 만나 그 방침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학생 고문은 학생, 교사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모든 문화권 출신의 학생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한다.

커닝 및 표절의 정의:

커닝

커닝은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 및/또는 자료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제공하면, 공유하고, 지참하거나, 또는 보여주는 것이다.

커닝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평가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보의 전달, 평가 중에 허가 받지 않은 자료 및/또는 기술에의 접근 및/또는 그것의 이용; 시험에 관한 정보를 한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전달,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저작물의 제출.

표절

표절은 타인의 말, 자료, 아이디어 또는 의견을 각주 또는 참고문헌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표절에는 정확한 표현이나 문구 또는 자구 수정,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저작물의 제출이 포함된다.

커닝 및 표절에 대한 방침:

교사들은 일일 숙제에 대한 커닝/표절에 관하여 우려 사항을 고심하여 다룬다. 모든 기타 과제는 그 방침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학점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어떠한 저작물 (초안 및 개요 포함)도 이 방침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의 커닝에 관한 기록은 관리자의 사무실에 있는 그 학생의 서류철에 보관한다. 위반사항은 징계 전체에 걸쳐서 누적되는 누적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면, 학생이 2학년때 물리학 과목에서 커닝을 하고 그 다음에 4학년때 영어 과목에서 표절하는 경우, 그것은 그 학생의 두 번째 위반행위이다.

학생이 커닝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그 학생은 전국 우등생 단체(National Honor Society)의 후보가 될 수 없고 시민의 자질 요건이 있는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 **위법행위 #1:** 교사는 학생에게 위법행위를, 가능하면 은밀히 알린다.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다음 사람 중 아무와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상담교사 및 부서장. 학생은 과제에 대하여 0점을 받는다. 관리자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
> **위법행위 #2:** 교사는 학생에게 위법행위를, 가능하면 은밀히 알린다.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다음 사람 중 아무와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상담교사 및 부서장. 학생은 과제에 대하여 0점을 받으며, 커닝이 있었던 과제의 가치와 동등한 또 다른 0점은 그 분기의 등급으로 균분된다. 관리자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
> **위법행위 #3:** 교사는 학생에게 위법행위를, 가능하면 은밀히 알린다.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아래 사람 중 아무와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상담교사 및 부서장. 학생은 그 위법행위가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그 분기에 낙제한다. 관리자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모든 이후의 위법행위는 위법행위 #3에 기술된 처벌을 받으며, 관리자 는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 사건의 기록을 유지한다.

규칙 1.4: 개인용 전자기기에 관한 방침

브룩클린 고등학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소통과 견실한 인간관계의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학교문화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한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SMARTS로 요약된 아래의 5가지의 신조를 믿는다:

학생(Students: S):	학생은 브룩클린고등학교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태도(Manners: M):	학생은 기술에 대한 훌륭한 태도를 지니고 브룩클린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가용성(Availability: A):	학생은 타인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
존중(Respect: R):	학생은 기술을 사용할 때 존중을 해야 한다.
교사(Teachers: T):	교실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여부 및 방법은 교사가 결정한다.
조용함(Silence: S):	기술의 모든 사용은 조용해야 한다.

개인용 전자기기는 정보의 저장, 처리 또는 전송이 가능한 무선 및/또는 휴대용 장비를 말한다. 이들 기기에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스마트폰/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컴퓨터/태블릿, 엠피3(MP3) 플레이어와 기타 휴대용 오락시스템, 그리고 AV녹화장치 또는 카메라가 포함된다.

기술 및 개인용 전자기기의 사용은 특권이며 학교의 흐름에 혼란을 주거나 교실에서의 학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존중하는 사용을 지키기 위한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휴대전화: 안뜰을 포함하여 건물 내 어디에서든지 전화 통화 금지. 이 규칙은 수업일 오전 8시 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중앙 출입구에 있는 아트리움 밖의 현관에서만 허용된다.

헤드폰: 학생은 안뜰을 포함하여 건물 내에서 헤드폰을 (목 또는 귀에) 착용할 수 없다. 해드폰은 교사 또는 도서관원이 그 사용을 허가한 때에 한하여 교실에서 허용된다. 이 규칙은 수업일 오전 8시 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교실 내 전자기기의 사용: 학생에게 기술에 대한 각 교사의 방침을 강의 요강 또는 학업 성취 기대 사항의 일부로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5가지 신조(SMARTS) 포스터를 각 교실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처벌

그 새로운 방침을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는 점진적 징계가 적용된다. 학생이 직원의 정당한 요구(예컨대, 그 학생 또는 그 관리자의 이름을 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위법행위 1	경고	교사/직원은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위반사항에 관한 통지를 보낸다. 관리자는 위반사항을 적고 학생과 논의한다.

위법행위 2	방과후 학교에 남게 하기	교사/직원은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위반사항에 관한 통지를 보낸다. 관리자는 위반사항을 적고 학생과 논의한다. 학생은 방과 후 학교에 남는 처벌을 받는다.
위법행위 3	회의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기 교정 출입금지	교사/직원은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위반사항에 관한 통지를 보낸다. 관리자는 학생과 만나 개인용 전자기기의 적절한 사용계획을 세우고 압수를 포함하여, 가능한 처벌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학생은 방과 후 학교에 남는 처벌을 받고 X-관 출입이 2주일 동안 금지된다.
위법행위 4	학부모 회의 개인용 전자기기 압수 방과 후 학교에 남게 하기	교사/직원은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위반사항에 관한 통지를 보낸다. 관리자는 학생 및 학부모와 만나 처벌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추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학을 포함하여 가능한 처벌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학생은 최소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전화를 사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X-관 출입이 한 달간 금지된다.
위법행위 5 이상	추후 결정	교사/직원은 학생처장의 비서에게 위반사항에 관한 통지를 보낸다. 관리자는 학생과 협의하여 처벌을 결정한다.

또한, 전자기기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내 처벌을 받게 되고/되거나 경찰에 이첩된다. 여기에는 학생, 직원, 또는 교수진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괴롭힘, 또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자기기를 오용(커닝, 표절 또는 타인의 통신을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기타 가능한 법적 및/또는 교내 처벌 외에 그 장비를 즉시 압수당하게 된다.

규칙 1.5: 흡연에 대한 방침

매사추세츠 주의 초등 또는 중등 공립학교에 등록된 어느 학생이든 정규 수업 시간 중에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종류이든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학교 건물이나 학교 시설 내에서, 또는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버스에서 학교 직원을 포함한 개인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71장, 제2A조;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71장, 제37H조;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의 방침 편람, 제G조 (1)항 (c)호.

2014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학생 및 교직원은 브룩클린 타운의 담배 규제 조례(Tobacco Control By-law) 제8조 23항에 따라, 학교운동장과 브룩클린 고등학교 건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위법행위 #1: 학생에게 경고를 준다. 전화를 걸어 학부모/보호자에게 이러한 교칙 위반을 통지하고, 또한 서신 또는 이메일을 가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위법행위 #2 (및 이후의 위법행위): 학생을 브룩클린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의 담배교육 프로그램(Tobacco Education Program: TEP)에 위탁한다. 담배교육 프로그램은 1회의 교육과 당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의 평가회의로 구성된다.

학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인 그 학생을 추가 교육에 등록시킬 선택권이 주어지며, 추가 참고 자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 학생과 그 학부모/보호자는 21일 이내에 담배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담배교육 프로그램 상담교사가 학생처장에게 되돌려보내어 징계조치를 받게 한다.

규칙 1.6: 중간 시험 및 기말 시험에 지각 금지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지각하는 학생에게는 그 시험을 끝마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이 허여되지 않는다. 그 시험을 담당하는 과목 교사는 이 규칙의 예외를 허여하고 그 결정을 시험감독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규칙 1.7: 도박 금지

위법행위 #1: 금전 및 다른 관련 품목의 압수, 그리고 그 학생의 관리자, 학부모/보호자(들) 및 상담교사와 협의.

위법행위 #2 (및 이후의 위법행위): 그 학생의 관리자 재량에 따른 징계 조치.

II D. 제2조. 타인에 대한 존중

견실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위한 토대이다. **상호 존중은 브룩클린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인간적 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과 소통하는 어른, 학생과 소통하는 학생, 그리고 어른과 소통하는 어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학교 또는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에서 학생과 직원은 요청을 받을 경우 자신의 이름을 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은 어른들의 정당한 지시를 항상 따라야 한다. **브룩클린 고등학교 직원이 물을 경우, 학생이 그 이름을 대지 않거나, 허위로 이름을 대거나, 어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학생을 관리자에게 이첩하여 즉시 처벌을 받게 한다.**

규칙 2.1: 싸움 또는 물리적 폭력의 사용 금지

위법행위 #1: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 학생은 3일까지 정학에 처한다 (이것은 적벌 절차에 관한 법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제II조 A항 참조). 관련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 그리고 담당 관리자가 참석하는 징계 심리를 가능한 한 조속히 준비한다.. 조정은 의무적이다.

위법행위 #2: 상기 #1에 나와 있는 모든 조치 및 10일까지의 정학, 상담, 그리고 점진적 징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장 주관으로 그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 및 관리자가 포함된 징계 심리.

규칙 2.2: 무기에 대한 불관용 원칙

학교 건물 내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의 금지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269장 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j) "누구든지,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로서, 제140장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건물내 또는 운동장에서 다음에서 정의하는 (장전되거나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자신의 몸에 소지하는 자는 일천달러($1,000) 이하의 벌금이나, 일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두 가지 형을 병과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총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총알, 탄환 또는 산탄이 발사될 수 있는 모든 권총, 연발권총, 소총 또는 활강총을 의미한다. 1989년 주 법, 제150장 2조에 의거 수정됨

무기는 무엇이든지 총기, 막대기, 황동 너클, 칼, 총탄 또는 도구처럼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금지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무기의 소지, 판매 또는 전달을 목격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은 이것을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학생은 금지품을 그 직원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학생은 또한 제II조 B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색도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1 (및 이후의 위법행위): 징계 심리는 그 학생의 관리자가 그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출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학생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학생은 정학에 처해지고 교장에게 이첩되어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다.

교장 또는 지정 받은 관리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있다면, 훈육 보고서(Disciplinary Report)를 제출하고 경찰국 청소년 보도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장은 경찰국과 협의하여 고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금지품은 경찰국에 넘긴다.

규칙 2.3: 학교 또는 학급의 혼란 금지

학급, 도서관 또는 다른 학교 활동을 어지럽히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 공동체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는 학교 건물 내에서 입구 차단, 이동의 접근 거부, 라디오를 틀어 놓기, 고함지르기, 스케이트 보드 타기, 공 튀기기,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블레이드 타기, 눈덩이나 물풍선 던지기, 물총의 소지/사용, 또는 학교 활동을 어지럽히는 기타 행동이 포함된다.

> **위법행위 #1 (및 이후의 위법행위s):** 당해 물품은 직원이 압수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직원은 또한 법위반 학생을 가장 가까운 관리자에게 데려가기도 하거나, 최소한 신고한다. 그 학생의 관리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징계 심리를 실시하며 (교정 출입금지를 포함한) 적절한 처벌을 부과한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규칙 2.4: 말 또는 글에 의한 괴롭힘 금지

말에 의한 괴롭힘은 위협, 몸동작, 또는 글로 직접 또는 전자기기를 통하여 보낸 말에 의한 인신공격으로 정의하며,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 배경, 성적 기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외모를 겨냥한 공격은 물론 성적 모욕도 포함한다.

괴롭힘은, 경우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른 개인의 민권 침해를 의미한다.

> **위법행위 #1**: 목격한 학생, 어른 또는 피해자는 그 사항을 가장 가까운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그 학생의 관리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통지하고 모든 관련 학생, 관리자(들),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과 징계 심리를 실시한다. 관리자(들)이 개인의 민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브룩클린 경찰국의 청소년 보도관이 관여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조정 및 상담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이후의 위법행위: 삼(3)일간 정학 및 #1의 모든 조치.

주 정부 따돌림 방지법:

2010년 5월 30일에, 데발 패트릭(Deval Patrick)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제 71장 370조 “교내 따돌림에 관한 법(An Act Relative to Bullying in Schools.)"에 서명하였다. 그 법에 따라 각 학구는 따돌림에 대처할 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브룩클린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안전하고 또한 각 개인에 대한 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오면서 오랫 동안 쏟아온 우리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우리의 존중 문화를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처벌은 항상 강력하였다. 새로운 법에 의거, 우리는 따돌림에 대처할 공식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감의 지도 하에, 그리고 모든 브룩클린 공립학교들과 함께, 우리는 이 절차에 관여한다. 그 동안에, 우리는 주 정부의 따돌림 용어 정의와 따돌림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행 절차를 게시한다.

따돌림은 한 명 이상의 학생들이 (i)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ii) 피해자를 피해자 자신에 대한 위해 또는 피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 공포 상태에 빠지게 하고; (iii) 피해자에 대하여 교내에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iv) 학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v)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중대하게 그리고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겨냥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표현, 또는 신체적 행위나 몸동작 또는 어떠한 조합이든 조합하여

사용하는 이러한 수단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돌림에는 사이버 따돌림이 포함된다.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들은 이제 즉시 시행되는 아래와 같은 단기적 조치를 사용한다:

1. 각 학교 직원은 그 직원이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던 (법에서 정의하는) 따돌림 또는 보복의 어떠한 사례도 즉시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그 보고를 받으면, 교장은 24시간 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결과 따돌림 행위(들)이 확인되면, 교장은 학부모/보호자들에게 모든 관련학생을 통지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을 개입시켜야 한다.
3. 교장은 그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내에 교육감에게 당해 신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교장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추가 따돌림이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Dr. Karen Shmukler)은 교장들의 조사를 돕는 것은 물론, 이러한 잠정 절차의 시행을 지원하기도 하는 자리이다.

규칙 2.5: 부적절한 성행위의 금지

(이 규칙은 그 행위가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A.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일반법 제265장 43조)에서 “그 사람을 심각하게 놀라게 하거나 괴롭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당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 행동 양태 또는 일련의 행위에 일정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죽음 또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절박한 공포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협”하는 개인으로 정의한 바에 따른 **스토킹의 금지.**

B. **성적 접촉의 금지**, 이에는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 배 및 가랑이 안쪽의 접촉이 포함됨. 그러한 접촉은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 (즉, 일반법 제 265장 13B조)에 의한 중범죄인 “저속한 폭행 및 구타”가 될 수 있다.

C. **부적절하고 협박에 의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 이에는 때리기, 주먹질, 꼬집기, 사람의 활동 제약 또는 사람의 진로 차단, 붙잡기, 뺨 때리기 또는 부적절하게 무릎에 앉히기 또는 머리 잡아당기기가 포함된다. 그러한 행위는 매사추세츠 주 일반법(즉, 일반법 제 265장 13A조)에 의한 중범죄인 “폭행 및 구타”가 된다.

D. **부적절하고 협박에 의한 성적인 말이나 몸짓의 금지**, 이에는 욕설 및 개인의 신체에 관한 언급 또는 개인의 몸을 곁눈질 하기가 포함된다.

E. **오래 계속되는 키스 금지.**

F. **자기의 옷이나 남의 옷을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의 금지.** 그러한 노출은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거 중범죄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이 규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며, 관리자는 각 사건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량권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양해한다.

위반 #1: 관리자는 학부모/보호자를 호출하고 경고를 준다. 규칙 “A,” “B,” “C,” 또는 "F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은 즉시 개입될 수 있다.

위반 #2: 관리자 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참석하는 징계 심리를 준비하고, 만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또는 기타 학술적 저작물을 지정한다. 그 작업을 적시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2일간의 정학에 처하게 된다. 상담도 고려한다.

위반 #3: 관리자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참석하는 징계 심리를 실시한다. 정학과 교정 출입금지를 검토한다.

규칙 2.6: 성희롱의 금지

A절: 근거 및 기본적 약속

4. 괴롭힘 금지: (1994년 6월 28일에 표결됨; 성희롱으로서 #94-73; 개정: 2003년 6월 19일, #03-76)

브룩클린 소재 공립학교들은 연령, 피부색, 장애, 성별, 성적 정체성, 출신국, 민족, 종교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가하는 어떠한 괴롭힘도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 직장 또는 학교환경에서 그러한 괴롭힘은 불법이며 절대 금지된다. 이에는 학교 또는 학교와 관계 있는 행사에서 관리자, 인증받은 지원 요원, 학생, 납품업체 및 다른 개인이 가하는 괴롭힘이 포함된다. 또한, 괴롭힘에 대하여 고발한 개인에게 또는 괴롭힘 고발의 조사에 협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가하는 어떠한 보복도는 마찬가지로 불법이며 용납되지 아니한다. 고의적으로 허위 고발을 하는 것은 최고 정학 또는 제적/퇴학을 포함하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이 방침을 채택함으로써, 브룩클린 학교위원회는:

1. 학교 환경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미술책, 조각, 문학 등과 같은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자료에 관한 토의를 금지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2.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관련자들의 연령과 능력이 감안되도록 지도한다.
3. 교육감에게 학교 위원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괴롭힘 고발 절차(Harassment Complaint Procedures)*를 검토하도록 명령한다.

고발 관리자, 고발 책임자 및 직원들의 적절한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이 방침 및 *괴롭힘 고발 절차의* 사본 1부를 각 직원에게 제공한다.